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9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9월 1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년 9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99. 2. 5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제명개정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안 제2조)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안 제6조)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유재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내용이 '99. 2. 5(법률 제5817호) 개정된 후 우리구에서 '99년 3월 제62회 임시회의시 제정하였으나 '99년 4월 서울시지침(82590-724)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본 조례에 의거 시행하도록 한 바 조례명 및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서 기존의 조례가 제7조로 구성된 조례를 10개조로 3개조가 늘어난 반면 조례명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의 기준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이 통행할 수 없는 구역과 청소년이 통행은 하되 시간을 정하여 통행을 제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와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지정의 절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관계기관(학교, 경찰서 등)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5조(지정해제) 지정된 구역이 여건의 변동으로 통제의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공보에 게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금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표시(안내판 등)를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설치를 하여야 하는 규정을 하였으며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해당지역 내에서 청소년 선도계획과 제한을 위한 감시초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며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지정된 금지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규정과

제9조(협조체제유지) 청소년 문제는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하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10조(시행규칙)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전문10조와 부칙으로 정하여졌으며,

본 조례안은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한차원 높여 범국가적 사업으로 홀어져 있는 영등포역 앞과 같은 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정부에서 인정하는 구역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택가로 파고드는 퇴폐 주점가도 단호한 결단을 갖고 단속을 펴 뿌리를 뽑도록 대책 강구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 한사람의 힘으로 규정만 만들어 놓고 업무의 추진이 부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심도 있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보호법이 '99. 2. 5일 개정된 후 '99. 3. 30일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로서 제정당시 개정된 법률에 맞는 조례제정을 하였다면 5개월 후에 전문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
----------	----

제출년월일 : 1999. 9.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99. 2. 5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개정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및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안 제2조)
- 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안 제6조)
- 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근거

- 청소년보호법 개정('99.2.5), 시행('99.7.1)
-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권고(안) 통보  
 -체청 82590-724('99.4.30)호
-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편성 61,190천원
- 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